

청주지방법원 2022. 1. 20 선고 2021가단6699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. 20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B 사이에 2019. 12. 30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B에게 청주지방법원 2020. 1. 2. 접수 제1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오상혁

별지